

제334회 정례회  
2014. 9. 30.(화)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#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2014. 9. 30.(화)

행정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7일

-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이우종)

#### 1. 제안사유

○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5조 제3호)

-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➔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-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➔ 전액 또는 일부 반환
  - 천재지변이나 공익 목적으로 취소 : 전액
  -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 : 취소시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자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사안별로 규정하는 것으로
- 공공시설물이 일반인에게 많이 개방되는 현실에서 시설사용에 대한 근거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반환사유를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인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2항 제2호의 ‘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’에서 시설사용 신청자가 사용개시 5일 전(前)에 취소할 경우에 연수원에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“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”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

7. 수 정 안 요 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9. 17. / 윤은희 의원

○ 수정이유

- 안 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2항 제2호

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

나목 “사용개시 전일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”

조문 중 사용개시 5일 전(前)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일 취소에는 “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”고 되어있음.

- 이는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○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 제2항 제2호

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을 “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”으로

나목 “사용개시 전일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”를 “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”으로 한다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

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1. 수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2항 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, 나목 “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한 금액” 조문은 사용개시 5일 전(前)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“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”고 되어있으나, 이는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

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을 “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”으로  
나목 “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”를 “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제2항의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가. 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

나.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 <u>①연수원을 사용하고</u>            자 하는 자는 사전에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            른 연수원 사용신청서            를 연수원장에게 제출           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 <u>① 연수원 시설물을</u>  <u>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</u>  <u>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</u>는           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에 따른 연수원 사용신            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            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          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          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            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          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         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           있다.</p> <p>1. 사용목적에 위반하            거나 사용료를 체납하            였을 때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            의 불가항력적인           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           수 없게 된 때</p> <p>3. <u>그 밖에 연수원장이</u>  <u>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)           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          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           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           허가를 취소할 수 있            다.</p> <p>1. 사용목적에 위반하            거나 사용료를 체납하            였을 때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            의 불가항력적인           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           수 없게 된 때</p> <p>3. <u>연수원장이 공익의</u>  <u>목적으로 사용하기 위</u>  <u>하여 필요하게 된 때</u></p>	<p>제5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</u></p> <p>2. <u>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할 경우</u></p> <p>가. <u>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</u></p> <p>나. <u>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</u></p> <p>다. <u>사용 개시일 이후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 <u>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</u></p> <p>나. <u>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</u></p> <p>다. (개정안과 같음)</p>

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9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5조제3호)
  -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- ➔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- 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 변경(안 제8조)
  - 시설사용료는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 납부
    - ➔ 시설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
  -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
    - ➔ 전액 또는 일부 반환
  - 천재지변이나 공익 목적으로 취소 : 전액
  -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 : 취소 시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1.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
  2.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할 경우
    - 가. 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
    - 나. 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
    - 다. 사용 개시일 이후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<u>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<u>연수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</li> <li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</li> <li>3. <u>그 밖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li> </ol>	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</li> <li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</li> <li>3. <u>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</u></li> </ol>
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<u>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</li> <li>2.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</li> <li>나. 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</li> <li>다. 사용개시일 이후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li> </ul> </li> </ol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

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